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0년 9월 2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 :

-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20.3.10 개정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 되는 기준가격	매입 기준가격 적용 일 변경	1) 17시[오후5시]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)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※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동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 한 <u>당일</u> 에 모투자신탁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 야 합니다.	1) 17시[오후5시]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)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※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동하여야 할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 한 <u>익영업일</u>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 여야 합니다.
제2부.	환매 기준가격 적용	1) 17시[오후5시] 이전에	1) 17시[오후5시] 이전에

<p>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 되는 기준가격</p>	<p>일 변경</p>	<p>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 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5영 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 급</p> <p>2)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6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금 액 지급</p>	<p>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 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6영 업일(D+5)</u>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10영업일(D+9)에 환매금액 지급</p> <p>2) 17시[오후5시] 경과 후 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7영업일(D+6)</u>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 (D+10)에 환매금액 지급</p>
<p>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 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	<p>시행령 개정사항 반 영(2020.3.10 개정)</p>	<p>증권시장(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)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(해 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 함)에서 공표하는 가격</p>	<p>증권시장(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)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해외 증권의 경우 전 날의 최종시가) 또는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 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 장을 포함함)에서 공표하 는 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